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조건의 한계1)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입영신체검사를 통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2011년 5월과 6월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대신에 지방 병무청과 검찰청에 병역 및 대체복무를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며, 대체복무법을 검토해본 결과 대체복무가 군 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유럽 기준으로는 이 대체복무법이 진정한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군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대체복무는 군 당국에 의해서 조직·감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대체복무자들은 군 형벌 제재의 대상이 되었고, 아르메니아군의 하위부서에 등록하여야 했다. 게다가 법률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들은 하루 24시간 1주일 내내 자신이 복무하는 곳에 머물러야 했다.

청구인들은 모두 기소되어 구금되었으며 26개월에서 27개월 사이의 형을 복역한 후 2013년 10월에 석방되었다.

청구인들은 아르메니아 대체복무가 유럽인권협약 제9조2)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위반하였다며 유럽인권협약 제34조3)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대체복무가 군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대체복무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 *Adyan and others v. Armenia*, no. 75604/11, ECHR (2017. 10. 12. 결정).

2)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혹은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 3) 제34조(개별적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체약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2. 관련 아르메니아 국내법 및 국제법

(1) 아르메니아 형법

제327조 제1항은 법률상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징집이나 대체복무의 회피는 2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엄격한 격리상태를 조건으로 한 징역형이라고 정의내려짐)이나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2003년 12월 17일 제정, 2004년 7월 1일 효력 발생)

제2장. 대체복무의 개념과 형태

1. 이 법에서 대체복무는 의무적인 기한부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를 의미한다. 이 대체복무는 무기의 소지, 보유, 유지, 사용을 하지 않으며 군과 민간시설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두 가지 종류의 대체복무가 있다:

(a) 대체군복무는 아르메니아군에서 이행하는 군복무로서 전쟁에 투입되거나 무기의 소지, 보유, 유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

(b) 대체노동복무는 아르메니아군 이외에서 실시하는 복무이다.

3. 대체복무의 목적은 조국과 사회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보장하고, 처벌적, 모욕적, 모멸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

제3장. 대체복무의 근거

1. 자신의 교리나 신념이 무기의 소지, 보유, 유지, 사용을 포함하여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는 것과 배치되는 아르메니아 국민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제5장. 대체복무기간

대체군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대체노동복무기간은 42개월이다.

제14장. 대체복무시행 보장

대체복무에 대한 징집은 아르메니아 정부가 승인한 국방 분야의 공공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감독된다.

(3)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 개정(2013년 5월 2일 개정, 2013년 6월 8일 효력 발생)

2011년 4월 28일에 대체복무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개정안 보고서에는 개정 전 법률이 유럽평의회에 가입하면서 아르메니아가 약속한 의무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국제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개정 전 법률의 주요 결점은 대체복무가 군의 감독을 받는 점, 대체복무기간 등이 있었다.

제5장이 개정되어 대체군복무기간은 30개월, 대체노동복무기간은 36개월로 각각 단축되었다. 제14장 역시 개정되어 대체군복무는 국방 분야의 공공기관이 조직하고 감독하지만 대체노동복무는 정부에 의해 승인된 공공기관이 조직하고 감독한다.

(4) 아르메니아 군복무법(2002)

제4조는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정해놓고 있다.

(5) 아르메니아군 작전참모총장 명령 2004년 12월 20일 142호

대체복무에 징집된 사람들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메니아의 군 장교(commissar)와 국방부의 헌병부서장에게 다음을 명령한다: (a) 지역 군 군수부와 하위부서 지역에 위치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한 주간(weekly) 불시검문; (b) 월말에 작전참모총장에게 불시검문 결과를 보고; (c) 대체복무자가 결석일 경우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전참모총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

(6) 국제협약

유럽평의회 각료회의(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병역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자들에 관한 권고 R(87)8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기간은 병역의무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여야 한다.”

회원국 내 군인들의 인권에 대한 권고 CM/Rec(2010)4

군인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의 지위와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권고의 보충보고서에는 유럽사회권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에 따르면 대체복무가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으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다.

유럽평의회 의원총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권고 1518(2001년):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자들의 권리 행사

확실한 민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억제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 입법을 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서 입법을 권고한다.

의견 221호(2000년): 아르메니아의 유럽평의회 회원가입신청서

아르메니아는 유럽평의회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회원국이 되고 3년 안

으로 유럽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법을 도입하고, 도입하기 전에는 형을 복역하고 있거나 혹은 영창에 있는 모든 양심적 거부자들을 사면하고, 대체복무법이 도입된 후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군복무나 대체복무를 할 선택권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결의안 1532(2007년): 아르메니아의 의무와 약속 이행

대체복무와 관련된 아르메니아의 법은 2005년과 2006년 6월에 개정되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여전히 유럽기준에 이르는 확실한 민간성격의, 억제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이 아닌 대체복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진정한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수의 양심적 거부자들이 - 그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 계속해서 복역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아르메니아 당국으로 하여금 유럽평의회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법을 개정할 것과 복역하고 있는 젊은 양심적 거부자들을 사면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인종차별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아르메니아 관련 두 번째 보고서(2006년 6월 30일 채택)

아르메니아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체복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4년에 대체복무법이 발효되긴 했지만 일반 군복무자들에 비해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이 훨씬 더 길고, 대체복무가 군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기관들의 장은 복무환경과 방법에 대해 군의 지시를 받고, 대체복무자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군병원으로 보내지며, 그들은 또한 군복을 입어야 하였다. 업무 배정과 바뀐 업무의 배정 역시 군에 의해 결정되었다. 대체복무법의 목적은 군복무 거부자들이 투옥이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대체복무에 끼치는 군의 영향력으로 인해 대체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이 입법목적이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유럽평의회 인권감독관(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2011년 5월 9일 보고서

아르메니아에는 진정한 민간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데 현재 약 70명이 군복무 혹은 대체복무거부를 이유로 아르메니아 형법 제327조 위반에 근거하여 복역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에 걸친 양형을 선고받는다. 대체복무 관련법은 아르메니아에서 2003년에 도입되어 2004년부터 효력이 생겼지만 복무는 군의 감독하에 있고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큰 이유이다. 또한 기본 군복부 기간이 24개월임에 반해서 대체복무는 42개월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회권위원회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이 기간이 과도하며 유럽사회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제1.2장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 헌장하에서 대체복무기간은 일반 군복무기간보다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인권감독관과의 회의에서 아르메니아 국방부 간부들은 대체복무법을 개정할 의지를 비추었다. 특히 대체복무의 감독을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진정으로 민간성격의 대체복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대한 정식 회신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여전히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대체복무에서 군의 통제를 중단하고 민간적 통제를 위한 개정을 할 의지를 보였다. 대체복무는 보건부와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그리고 국방부의 엄격한 민간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3. 판결요지

법정의견

(1) 유럽인권협약 제9조 위반 주장

청구인들은 그들에 대한 형사절차와 유죄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체복무가 진정으로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복무가 엄밀히 따지면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제도의 모든 내용과 대체복무자의 모든 활동이 군의 통제와 감시하에 있었다. 군 당국은 대체복무자를 임의로 다른 복무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대체복무자들은 1주일 24시간 내내 자신의 복무지에 있어야 하였고 군당국이 제공한 군복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어야 하였다. 대체복무자들의 신원을 기록한 소책자의 겉표지에는 군의 휘장이 그려져 있었고, 대체복무를 다 이수한 이후에는 예비군에 등록이 되었다. 규정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군의 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았고 대체복무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국군 내부규칙을 정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였다. 대체복무자들은 복무기간 내내 군 당국과 그 규율을 따라야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체복무가 그저 군이 감독하는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청구인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체복무는 비무장한 군복무와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관련법이 후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들며, 이는 정부가 개정 전의 법률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밝혀진 결함 중 하나는 대체복무가 군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이였다. 개정 전에는 명확하게 민간의 성격을 가진 진정한 대체복무가 아르메니아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평의회 의원총회와 각료회의는 아르메니아 당국에 지속적으로 명확한 민간대체복무를 도입하라고 요구해왔다. 청구인들은 2013년에 결국 법이 개정되어 모든 군 통제와 감독을 없애고 대체복무제도를 순수 민간정부하에 배치한 것으로 보아 자신들을 기소하고 구금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2) 아르메니아 정부의 주장

아르메니아 정부는 유럽평의회에 가입한 이후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법에서 많은 요소가 누락되었고 유럽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형사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아르메니아 국내 법원은 그 당시에 효력이 있던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형사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당시에 있었던 대체복무제도는 민간의 성격을 지녔으며, 군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몇 가지 형식적인 정도의 군 감독 요소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번 사건 청구인들은 민간성격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Bayatyan* 사건⁴⁾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yatyan* 판결로 인한 선례의 변경과 베니스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관의 많은 의견들과 권고를 받아들여 무장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군복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식의 군사적 명령하에서도 복무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일에 아르메니아 국내법이 개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았고 유럽인권협약 제9조도 위반되지 않았다.

4) *Bayatyan v. Armenia*, no. 23459/03 ECHR(2011년 7월 7일 판결).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한 사건으로 역시 아르메니아가 사건 당사국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여호와 의 증인 신자였던 청구인이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2년 반의 복역을 하였다. 재판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을 존중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재판소의 판결

a. 권리가 제한되었는지 여부

아르메니아 정부는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권리가 제한되었지만 이는 합법적이었고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군정집과 대체복부를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표명이라고 생각하며, 군복무 회피에 대한 유죄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권리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한 제한은 1)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2) 협약 제9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을 하나 이상 가지고, 또한 3)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라면 협약 제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⁵⁾

b. 제한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제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하며,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협약 안에서 정의한 “민주사회”의 토대이다. 이 자유는 종교적 의미에서 신자들의 정체성과 인생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또한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들에게도 소중한 자유이다. 다원주의는 민주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고, 수백 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으며, 다원주의는 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달려있다. 이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종교적 신념을 가질 혹은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를 행사할 혹은

5) *İzzettin Doğan and Others v. Turkey* [GC], no. 62649/10, § 98, ECHR 2016.

행사하지 않을 자유를 수반한다.⁶⁾

종교의 자유는 우선은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이지만 또한 자신의 종교를 사적으로, 또는 사회에서, 혹은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표명할 자유를 의미한다. 협약 제9조는 예배, 선교, 종교행사와 종교의식 준수와 같은 종교나 신념 표명의 다양한 형태를 열거해 놓았다.⁷⁾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에 따르면 제한이 필수적인지 여부와 그 제한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협약 체결국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허용된다. 재판소의 임무는 국내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지와 그 조치가 균형잡힌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⁸⁾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판례들에서 재판소는 강제적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의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점과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있고 긴절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강제적 병역의무는 그 어떠한 제도라도 국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고 판시하여왔다. 이 의무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또한 이 의무에 대한 면제가 명확하고도 설득력 있는 근거에 의한다면 이 의무는 용인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발생할 심각한 위험이 있는 형태의 병역의무를 국민들에게 지운다면 이는 전체로서의 사회의 이해와 개인으로서의 이해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양심을 이유로 강제적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병역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서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대체복무는 아르메니아에 2004년에 도입되었고 아르메니아군 이외에서 복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소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관련 당국이 협약 제9조하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결론짓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소는 허용된 대체복무가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적절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

6) *Buscarini and Others v. San Marino* [GC], no. 24645/94, § 34, ECHR 1999-I; *Leyla Şahin v. Turkey* [GC], no. 44774/98, § 104, ECHR 2005-XI; and *Bayatyan*, § 118.

7) *Hasan and Chaush v. Bulgaria* [GC], no. 30985/96, § 60, ECHR 2000-XI, and *Bayatyan*, § 119.

8) *Leyla Şahin*, § 110.

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협약 가입국에게 일정부분 재량권이 허용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대체복무를 구성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률로든 실제로든 진정으로 민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억제적이거나 처벌적 성격이 아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협약 제9조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환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할 수 있었던 대체복무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민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대체복무자들은 고아원,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병원 등과 같은 민간시설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청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대체복무가 진정으로 민간적 성격인지를 판결하는데 있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권한, 통제, 적용가능한 규칙, 외적 요소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첫 번째로 재판소는 대체복무자들이 우선적으로는 자신들이 복무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총책임자에게 종속되지만, 그 업무를 감독하는데 있어서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군 당국은 아르메니아 국군 참모본부의 명령으로 민간기관에서 대체복무자들의 업무규율을 감독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불시점검을 하였고, 대체복무자가 승인 없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 군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였다. 두 번째로 군 당국은 대체복무자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다. 세 번째로 대체복무의 특정 부분은 국군의 내부 규칙에 따라 조직되었다. 또한 유럽인종차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기관의 총 책임자들은 군으로부터 복무환경과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건강검진을 위해서 군병원으로 보내졌으며, 군에 의해서 정해진 업무를 부여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대체복

무가 위계적으로나 기관적으로 군 체계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외적인 면을 보면, 대체복무자들은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자신의 복무지에 머물러야 하였다. 대체복무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소책자의 겉면에는 “아르메니아군”이라고 적혀져 있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들이 할 수 있었던 대체복무는 진정으로 민간적 성격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다음 쟁점으로, 대체복무가 억제적이거나 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복무기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는 인권감독관이 2011년 1월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르메니아에서는 군복무기간이 비교적 긴 24개월임에 반해, 대체복무기간은 이 기간의 1.5배 보다 훨씬 더 긴 42개월이다. 복무기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억제효과와 처벌적 성격이 있다고 재판소는 판단한다.

아르메니아 정부에서도 대체복무법으로 탄생한 대체복무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특히 아르메니아 의회는 이 법의 큰 두 가지 결함이 군의 감독과 복무기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체복무법은 결국 2013년에 이 결함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관련 정부규칙이 수정되거나 폐지되었다.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대체복무제의 결함들이 많은 수의 국제보고서와 아르메니아 국내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앞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볼 때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당국이 청구인들의 양심과 신념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협약 제9조에서 요구되는 전체로서의 사회의 이해와 청구인 개인들의 이해관계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잡힌 대체복무제도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청구인들의 유죄판결은 협약의 조항에서 정의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권리) 제한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9조가 위반되었다.

(2) 배상금

유럽인권협약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배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정당한 구제조치)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계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32,400유로를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유죄판결과 투옥으로 인해 비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12,000유로를 선고한다.

청구인들은 또한 아르메니아 국내 법원 소송과 재판소에서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면서 변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서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재판소의 선례에 따르면 그러한 비용은 실제로 이러한 비용이 필요해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있고, 그 금액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변제가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신은 그러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변호사와의 계약서 등 실질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청구는 기각한다.

(3) 결론

1. 만장일치로 협약 제9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한다.
2. 피청구국인 아르메니아 정부는 청구인에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손해배상액 12,000유로와 이 금액에 대하여 과세 가능한 세금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